

외국환거래약정서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년 월 일

본인

(인)

주소

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 이라 합니다.)과 수출·수입·내국신용장발행·"내국신용장환어음, 판매대금추심 의뢰서" 매입(추심)거래·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"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" 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약합니다.

제1장 공통사항

제 1 조 정의

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"화환어음" 이란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.
- ② "무화환어음" 이란 화환어음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그 대신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붙이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.
- ③ "내국신용장" 이란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신용장을 말한다.
- ④ "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(Open Account Transaction)" 란 물품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상인 상품선적과 함께 운송서류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발송하고,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을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수입상이 직접 입금시키는 수출거래를 말한다.
- ⑤ "대도" 란 은행이 고객의 '수입화물대도신청'에 따라 수입거래 관련 대금 결제 전에 동행의 수입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 채 당해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⑥ "일람출급" 이란 구비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⑦ "기한부출급" 이란 일람출급에 대칭되는 것으로 30일, 60일, 90일과 같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⑧ "차기통지서" 란 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지급지시 등에 따라 자금을 출금하였다는 통지서를 말한다.
- ⑨ "수입화물선취보증서" 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했으나 운송서류가 미도착하여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를 말한다.
- ⑩ "확인신용장" 이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을 말한다.
- ⑪ "(대고객)전신환매도율" 이란 현찰 외 외화 살 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보낼 때 적용되는 환율 등을 말한다.
- ⑫ "(대고객)전신환매입율" 이란 현찰 외 외화 팔 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 등을 말한다.

제 1 조의 2 적용범위

이 약정은 다음 각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(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거래를 포함합니다)에 적용하기로 합니다.

- ① 수출거래
 1. 화환어음(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.)의 매입 및 추심
 2. 보증신용장 등에 의한 무화환어음(Clean bill)의 매입
 3.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
- ② 수입거래



1. 신용장 발행
 2.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
 3. 보증신용장에 의한 무화환어음의 인도 결제
 4.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
- ③ 내국신용장발행거래
 ④ 내국신용장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(이하 "내국신용장어음 등" 이라 합니다.)의 매입(추심)거래
 ⑤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(Open Account Transaction)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(이하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라 합니다)

제 2 조 권리의 행사

- ① 수출화환어음, 내국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(은행의 매입대금을 말합니다.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.) 및 수출대금채권 매입대금에 관하여 은행은 아래 제10조, 제11조, 제23조,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보아 어음 채권(어음이 발생된 경우에 한함)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수입화환어음 및 내국신용장환어음 결제를 위한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(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한함)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담보

본인은 제1조 2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 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, 할인료, 수수료, 지연배상금,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하기로 합니다.

제 4 조 적용환율

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은행이 정한 해당 환율로 합니다. 다만,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5조 단서의 경우 은행의 미수금계정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 처리일의 은행이 정한 해당 환율로 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

- ① 본인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 2의 거래에 따른 이자, 할인료, 수수료, 지연배상금, 손해배상금, 기타 부대비용 및 은행의 권리행사, 권리보전,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, 운임, 보험료,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, 은행이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.
-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, 할인료, 수수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 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.
- ③ 제1항의 수수료 등을 본인 이외의 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 본인의 비용으로 은행이 본인이외의 부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청구한 때는 본인이 이를 곧 지급합니다. 다만, 은행이 본인이외의 부담자로 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
제 6 조 적용기간

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본인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합니다.

제 7 조 준용규정

본인과 은행은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「신용장통일규칙」, 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」, 「은행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」, 기타국제규약, 「전자무역업무기본약관」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2 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

제 8 조 환거래은행 및 송달방법의 선정

신용장 또는 계약서, 매입신청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거래 은행 및 화환어음의 송달방법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.

제 9 조 결제기간의 연장

지급의무자가 결제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은행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승낙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은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본인의 동의없이 승낙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승낙한 사실을 곧 본인에게 통지합니다.



제 10 조 매입대금상환

-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
 1.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(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화환어음
 2. 화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(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화환어음
-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화환어음에 대해 은행은 유선통화, 전자우편,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청구하고, 이에 따라 본인은 화환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.
 1.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
 2.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
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환어음이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여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여 "회수의문" 또는 "추정 손실"로 분류되어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 처리된 경우의 그 원화금액
- ③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(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든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 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기산합니다.
-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 신청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, 은행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, 수수료,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.

제 11 조 화환어음 등의 반환

-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(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)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을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② 본인은 은행이 반환하는 화환어음을 은행에서 수령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수출물품은 화환어음을 수령함으로써 되돌려 받은 것으로 합니다.
- ③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.

제3장 수입거래에 대한 특약

제 12 조 신용장의 발행, 통지 및 환거래은행 등의 선정

- ① 은행은 본인이 제출하는 신용장발행신청서(조건변경신청서 포함)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, 통지합니다.
- ② 신용장발행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거래은행(통지은행, 매입은행, 지급 은행, 인수은행, 확인은행, 기타 관련은행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 및 통지방법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.

제 13 조 대도물품의 처분

- ① 본인은 대도물품을 입고, 운반, 출고, 가공,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- ② 본인은 대도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, 물품의 인도,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.
- ③ 본인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,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은행에 양도하기로 합니다.

제 14 조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화환어음

- ①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화환어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통지 하기로 합니다.
- ② 화환어음이 은행에 도착하기 전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환거래은행 등으로 부터 지급 또는 인수 등의



동의여부에 대한 조회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.

- ③ 은행이 본인에게 신용장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를 하였으나 본인의 회보가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화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15 조 결제일

본인은 대금의 결제조건이 일람출급인 경우에는 화환어음(차기통지서가 먼저 도착 하는 경우에는 그 차기통지서) 도착 후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일이내에 결제하고, 기한부 출급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합니다. 다만, 기일이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여 결제하며 본인은 그 원화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제 16 조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

- ① 본인은 화환어음 도착 전에 운송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(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물품인도승락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
- ② 본인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결제대금을 적립하기로 합니다.

제 17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

- ① 은행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그 효력은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변경의 당사자(발행은행, 수익자, 확인신용장의 경우는 확인은행)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.
-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.

제 18 조 제3자 명의의 신용장발행

본인이 제3자 명의의 신용장 발행을 은행에 본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.

제4장 내국신용장발행에 대한 특약

제 19 조 지급금액

본인은 은행의 내국신용장 발행에 따라 은행에 지급할 해당금액은 다음 각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- ①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발행당시의 내국신용장 원화금액에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부기 외화금액에 매입(추심)은행이 내국신용장어음 등을 매입(추심)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청구한 금액
- ② 순수외화표시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외화금액
- ③ 순수원화표시 내국신용장발행의 경우에는 해당원화금액

제 20 조 구매물품의 처분

구매물품 처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합니다.

제 21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

은행은 본인이 관계당사자(발행은행, 수익자)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유효기일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은행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.

제 22 조 결제일

내국신용장의 결제일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합니다. 다만 제15조 '화환어음'은 '내국신용장어음 등'으로 대체합니다.

제5장 내국신용장어음 등 매입(추심)에 대한 특약

제 23 조 매입대금의 상환



-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국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
1.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(당연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의 모든 내국신용장어음 등
 2.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에 의하여 지급 거절되는 경우의 그 내국신용장어음 등
 - ②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(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 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내국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이자 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, 수수료,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은행은 매도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.

제 24 조 내국신용장어음 등의 반환

-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(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)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내국신용장어음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② 본인은 은행이 반환하는 내국신용장어음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은행에서 수령하기로 합니다.
- ③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어음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.

제6장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특약

제 25 조 선적서류의 발송

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와 관련한 '선적서류'(운송서류, 보험서류, 상업송장 및 수출계약서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는 본인의 책임하에 발송하고 그 증빙서류를 매입 신청시 은행에 선적서류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.

제 26 조 수출대금채권의 양도

본인은 수출대금채권 매입 의뢰시 은행의 정해진 양식인 '수출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대금지급지시서(STANDING PAYMENT INSTRUCTION)'을 수출대금채권의 지급의무자(이하 지급의무자라 합니다.)에게 송부한 후 지급의무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.

제 27 조 수출대금의 회수 등

- ① 본인은 지급의무자에게 수출대금을 은행에 직접 또는 은행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합니다.
-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출대금채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
 1. 수출대금채권 만기일로부터 은행이 정한 기일까지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수출대금채권
 2. 지급의무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의 당해 수출대금채권

제 28 조 이자 등

수출대금이 수출대금채권 만기일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, 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입금 지연이자 또는 부도이자를 지급합니다.

제 29 조 준용규정

본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"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"에 따릅니다.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본 인

(인)

